

● 제319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 
구성 결의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3. 6. 23.

운 영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 [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]

## I. 결의안 개요

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심미경 의원 외 26명 공동발의
- 나. 제안일 : 2023. 05. 30.
- 다. 회부일 : 2023. 06. 05.
- 라. 의안번호 : 815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·정서적 결손 문제가 심화되고, 물질적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정신건강(마음건강)과 관련한 지표는 악화되는 등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의 강화 및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임
- 그러나 현행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관련한 법적·행정적인 체계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모두 부처와 조직별로 산재되어 있고, 사안별 대응에 치중되어 있는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
- 이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체계의 구축을 위해 관련 시책을 개선·정비하고,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의 협력체계를

강화하고자 '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'를 구성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# 4. 이송처

○ 서울특별시의회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병수)

###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

- 본 결의안은 청소년 마음건강 악화 문제 대응을 위한 서울특별시(이하 '서울시')와 서울시교육청,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<sup>1)</sup> 구성을 제안함.

###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

- 정보통신기술의 발달, 소셜미디어와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, 유해 환경 노출 심화 등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라 아동·청소년의 마음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이 증가하고 있음.
- 여성가족부의 「2023 청소년 통계」에 따르면 2022년 중·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41.3%(전년 대비 2.5%p 증가), 우울감 경험률은 28.7%(전년 대비 1.9%p 증가)이고, 2021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살(자해)로 나타남.
- 개인의 정신건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미래세대인 아동·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.<sup>2)</sup>
- 이에 정부는 교육부,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등의 부처별로 아동·청소년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(특별위원회)

2) 국회입법조사처, 「아동·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,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」, 2021.5.11.

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- 교육부는 정서·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악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「학교보건법」 제2조 및 제7조, 「학교건강검사규칙」 제4조의 3에 근거하여 학생정서·행동특성검사를 매년 초등학교 1·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.
  - 보건복지부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·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실시, 지역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  - 여성가족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사이버센터, 청소년 상담 1338채널 등을 운영하고, 동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, 폭력·학대 등 청소년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법률 및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.
-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아동·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임.
- 서울시는 지난 3월 「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종합지원 계획」을 발표하고, 이를 토대로 ▲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인력 대폭 증원 ▲실시간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채널 신규 개설 ▲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신규 운영 ▲민간 전문 기관과 연계한 긴급 협력망 구축 ▲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음.
  -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3월 ‘상담·마음건강팀’을 신설하여 기존 3개 부서에서 각각 지원하던 상담·마음 건강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, ▲생명존중을 위한 학교별 연수 강화 등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 제고 ▲위(Wee) 센터,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, 권역별 거점병원(4개)과 상담·치료기관 지정(240개) 등을 통한 마음

건강 위기학생 집중 지원 ▲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·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심리정서 회복탄력성 지원 ▲관계가꿈 및 사회성 강화도움자료 보급 ▲대면상담을 주저하는 학생들을 위한 ‘메타버스 심리상담’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-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점검하고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프라 및 전문인력의 부족, 한정된 대상,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, 기관 간 연계, 청소년의 접근성 부족 등이 한계가 여전히 존재함.
- 다수의 연구와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가 필수적이나 기관 간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구성돼 원활한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, 특히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여러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<sup>3)</sup>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에 대한 종합적·전문적·통합적인 시책 구현 방안을 강구하고,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,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.
- 특히 COVID-19 사태 전후로 청소년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고 사태 후 이들은 답답함, 불안과 걱정, 우울,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<sup>4)</sup>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임.
- 또한 평생진로교육국(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)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, 시민건강국(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연계 등 지원)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,

3) 한국청소년연구원, 「아동·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,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」, 2021.12.31.

4) 한국청소년재단·코리아픽스, 「청소년,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」, 2020.8.12.

평생교육국(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및 성과평가)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부합함.<sup>5)</sup>

---

5)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

제37조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취 결과

- 결의안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제2항6)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취 결과, 별다른 의견 없음.
-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위원회별 사전협의는 다음과 같음.
  - 평생교육국의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대해 동의하였고, 서울시교육청(평생진로교육국)과 시민건강국의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사전협의에 대해서만 동의함.

---

6)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(특별위원회)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,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

## 붙임.1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

###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(안)

#### □ 관련 조례

#####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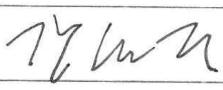
제3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,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22.2.24>

#### 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- 명칭 :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- 대표발의자 : 심미경

#### □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

소관부서	관련 상임위원회	사전협의 (O/X)	업무지원 (O/X)	확인서명 (상임위원장)
(서울시교육청)평생진로교육국	교육위원회	O	X	
(서울시)시민건강국	보건복지위원회	O	X	
(서울시)평생교육국	행정자치위원회	O	O	

2023년 5월 30일  
서울특별시의회